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332호)

2026.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1. 27.

다. 회 부 일 : 2026. 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노동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 10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제3호)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30년 12월 31일</u>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이만희의원안 2026. 1. 27. 발의(의안번호 16332)

☐ 개정안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으로써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한편, 각종 자연재해·가축질병·FTA 확대 등으로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는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¹⁾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규모화·현대화를 촉진하여 농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1990년부터 도입·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당시 2003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적용기한을 정하였으나, 이후 8차례에 걸쳐 2~3년씩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²⁾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어업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을 의뢰한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농·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최근 농·어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2)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함.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2
2021년	47,759	64.1	52,392	70.3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86,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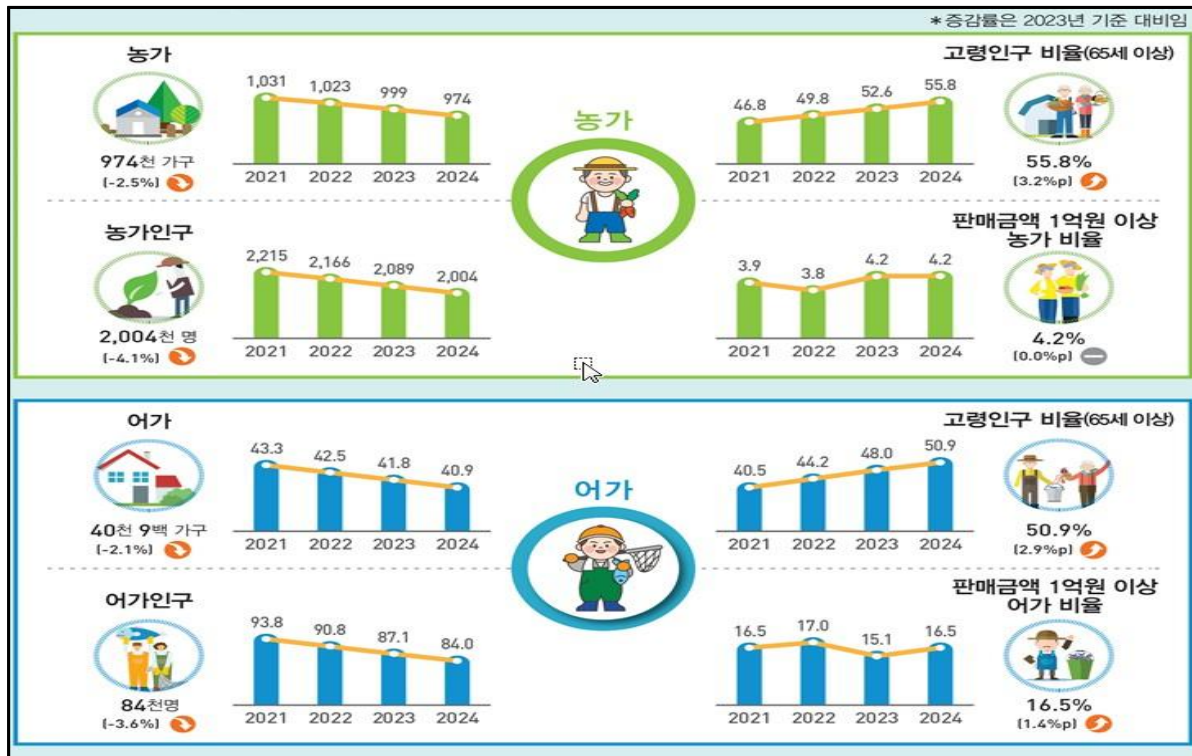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둘째,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은 농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세제혜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97만 4천 가구, 어가는 4만 1천 가구(내수면 제외)로 전년 대비 농가(△2.5%), 어가(△2.1%) 모두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55.8%, 어가 50.9%로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자료: 2024년 농림어업조사, 통계청(2025. 4. 17. 발표)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
 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
 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한편,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감면기간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는데, 적용기한을 당장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추후 조세특례의 효과성·타당성에 대한 분석 및 지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

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할 경우 농업경영 및 농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세수는 2027년 81억원 등 2027~2030년 4년간 총 419억원(연평균 1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³⁾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세 (74.7%)	△60	△71	△83	△98	△313	△78
지방소비세 (25.3%)	△20	△24	△28	△33	△106	△287
합계	△81	△95	△112	△131	△419	△1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3)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추계 제외